

##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 사유

(당사 「교육훈련규정」 제23조)

수습임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별규정에 정한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다.

1. 신입사원 과정별(오리엔테이션과정 및 전문과정) 교육성적 및 태도 불량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
  - 가. 교육성적 평균 60점 미만자
  - 나. 출석을 9할 미만자. 다만, 예비군교육, 병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다. 교육원생활 운영위원회에서 준칙위반을 사유로 퇴교조치한 자
2. 수습평정표상 실습평가 또는 자질평가 중 어느 한 항목의 종합평가결과에서 "양(D)"등급 이하를 받은 자